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4. 4.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및 일반안 9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4월 9일(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chaos96@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I. 운영위원회(6건)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33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36
-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39

II. 자치행정교육위원회(1건)

-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III. 복지문화건설위원회(2건)

-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 52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2일

발 의 자 : 이길숙 의원

찬 성 자 : 김기춘·이윤정·이영
호 의원

1. 제안이유

-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 정비,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연장자에서 최다선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중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련 내용 정비(안 제7조제4항)
-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전까지 현행 연장자에서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변경(안 제8조제2항)
- 상임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안 제9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4. 4. ~ 4. 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선임된 날부터 2년**” 을 “**2년**” 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 중 “**위원 중**” 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 | |
|------|-----------------------|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입안자 | 의원 이길숙 (2680-2539)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u>선임된 날부터 2년</u>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에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p> <p>② (생략)</p> |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2년-----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u>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u></p> | <p>제7조(특별위원회) ① ----- ----- ----- ----- -----.</p> <p>② ----- -----.</p> <p>③ ----- -----.</p> <p>④ 특별위원회는 <u>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u> 다만, <u>활동기한의 종료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u></p>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생략)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략)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상임위원추천은 총선거 후에는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3일 이내에, 보궐선거 후에는 당선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4조(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그리고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위원회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2일

발 의 자 : 이영호 의원

찬 성 자 : 이윤정·이길숙·김기
춘 의원

1. 제안이유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 경조사비·선물의 가액범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안 별표 1)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 다만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조정.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안 별표 2)
 - 상한액을 넘지 않는선에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직급별 차등을 두거나 시행령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급 가능
- 외부강의 등의 신고사항 정비(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3 서식)
 - 유형과 요청사유 제외
- 외부강의 등의 보완신고 기간 연장(안 제15조 제3항)
 - 보완신고 :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8. 4. 4. ~ 4. 9.

5. 참고사항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요약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입안자 | 의원 이영호 (2680-2508) |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등 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 | | | | |
|-----|----|--|---------------|--|
| 신고자 | 성명 | | 소속위원회 (정당) | |
|-----|----|--|---------------|--|

| | | | | |
|-----|---------------|--|-----|--|
| 요청자 | 기관명 | | | |
| | 담당부서 (담당자) | | 연락처 | |

| | | | | |
|-----------|--|--|--|--|
| 외부강의 등 주제 | | | | |
|-----------|--|--|--|--|

| | | | | |
|----|--|--|--|--|
| 장소 | | | | |
|----|--|--|--|--|

| | | | | |
|----|--------------------------------------|------|------------------------------------|--|
| 일시 | 20 ~ 20 시 분 ~ 시 분 | 일괄신고 |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 |
|----|--------------------------------------|------|------------------------------------|--|

| | | | | |
|-----|--|--|--|--|
| 사례금 | 총액 _____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 | |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가 총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액을 기재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초과사례금 신고서

| |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 신고자 | 성명 | | | 소속위원회 (정당) | |
| 요청자 | 기관명 | | | | |
|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 | | |
| 외부강의 등 주제 | | | | | |
| 장소 | | | | | |
| 일시 |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 | | | |
| 사례금 | 총액 _____ 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 | | | |
| 초과사례금 |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 | | | |
| 초과사례금 반환 | 반환여부 : | | 반환금액 : | | ※ 증빙서류 첨부 |
| | 반환방법 : | | |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u>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u>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p> <p>④ ~ ⑧ (생략)</p> | <p>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u>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u>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

| 구 분 | | 기 존 | 변 경 |
|----------------------|-----------------------|---------------------------------|-------------------------------|
| 가액 범위 | 음식물 | 3만원 | 동 일 |
| | 선 물 | 5만원 |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 | 경조사비 | 10만원 |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
| 선물 범위 | |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 외부 강의등 상한액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
| | 국공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
| |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원) |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100만원) |
| 외부 강의등 신고 | 사전 신고사항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포함 | 외부강의등의 유형, 요청사유 제외 |
| | 보완 신고기간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 | 매 년 | 신규채용 시 |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시행령 별표2 제2호나목)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 | |
|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2일

발 의 자 : 김기춘 의원

찬 성 자 : 이윤정·이영호·이길숙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회의 규칙 중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체포·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 갈음(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 원구성 지연방지를 위한 의장단 선출시기 규정(안 제8조제2항 신설)
- 의장단 선출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 금지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 의장단 임기 명확화(안 제9조제2항)
-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 조례안의 입법예고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안 제20조의5제1항제1호 ~ 제5호)

3. 개정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8. 4. 4. ~ 4. 9.

5. 참고사항

-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단 선출 방법 현황
-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회의규칙(권고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등록) 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신청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정견발언은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3을 삭제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그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4 단서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57조제3항 단서 중 “수도”를 “수”로 한다.

제66조의2의 제목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시정질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시정질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까지 질문내용”을 “전까지(휴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내용”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기가”를 “술기운이”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를 “수상하거나”로, “자”를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87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의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 |
|------|-----------------------|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입안자 | 의원 김기춘 (2680-2537)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등록)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u></p> | <p>제2조(등록) <u>광명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u></p> |
| <p>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u>의회운영위원회</u>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p> <p>② (생략)</p> | <p>제3조(의석배정) ① ----- ---- <u>운영위원회</u>----- -----. -----.</p> <p>② (현행과 같음)</p> |
|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② ~ ⑥ (생략)</p> | <p>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 -----. -----.</p> <p><u>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p> |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p> |

<신 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
다.

<신 설>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의3(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
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 1일
전 18시00분까지(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에는 당일 오전 10시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
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
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
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삭 제>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
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신청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정견발언은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
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필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 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삭제

② 전국동시지방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8조의4(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그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한다.

③ (생략)

<신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신설>

<신설>

(생략)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생략)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생략)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결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영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입법

③ -----

----- 운영위원회-----

-----.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

----- . ----- 운
영위원회-----
-----.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① -----

----- . -----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

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② (생략)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6조의2(집행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

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수 -----
--.

제66조의2(시정질문) ① -----

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집행부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의회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73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시정질문

② -----

----- 전까지(휴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내용-----

③·④ (현행과 같음)

제73조(경호) ① ----- 운영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방청의 제한) ① -----

- 1. ----- 사 랫

2. 주기가 있어 회의에 방해가 예상되는 자

3. 삭 제

4.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③ (생략)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2. 술기운이 -----
--- 사람

4. ----- 수상하거나 -----
-----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법 제86조-----

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

④·⑤ (현행과 같음)

| 구분 | 계 | 비고 |
|-----------------------|----|----------------------------------|
| 계 | 31 | |
| 교황선출방식 | 20 | |
| 사전등록 | 5 |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화성시, 광명시 |
| 교황선출방식 + 정견(소견) 발표 | 6 |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이천시, 의정부시 |

2 제2장 의장과 부의장

2-1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8)

-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확화 하여 원구성 지연을 방지
 -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
 -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

※ 「국회법」 제15조제2항과 동일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 제1항과 같음) |
| <신 설> |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 ②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2일

발 의 자 : 김기춘 의원

찬 성 자 : 이길숙·이윤정·이영호
의원

1. 제안이유

- 의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3. 개정규칙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4. 4. ~ 4. 9.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의 개정)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입안자 | 의원 김기춘 (2680-2537) |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 위 원 회 명 | 직 위 | 직 급 |
|-----------|---------------|---------|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 자치행정교육위원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 복지문화건설위원회 | 복지문화건설위원회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 | |
|----------|--|
|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2일
발 의 자 : 이길숙 의원
찬 성 자 : 이윤정·이영호·
김기춘 의원

1. 제안이유

- 의회운영위원회의 명칭이 운영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 내용과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의 띄어쓰기(안 제1조)
-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등으로 변경(안 제2조)

3. 개정규정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4. 4. ~ 4. 9.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안

제1조(「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광명시의회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 규정”을 “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광명시의회 포상 규정」의 개정) 광명시의회 포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입안자 | 의원 이길숙 (2680-2539)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p> <p>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p> | <p>제1조(「광명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의 개정)</p> <p>광명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p> |
| <p style="text-align: center;">광명시의회 포상 규정</p>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회 위원장은 <u>의회운영위원장</u>으로 하고, 각 위원은 <u>의회운영위원회</u> 위원과 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p> <p>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u>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u>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 ⑥ (생략)</p> | <p>제2조(「광명시의회 포상 규정」의 개정)</p> <p>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운영위원장</u>----- ----- <u>운영위원회</u> -----.</p> <p>③ -----.</p> <p>④ ----- <u>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u>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 |
|----|--|
| 의안 | |
|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2일

발 의 자 : 이영호 의원

찬 성 자 : 이윤정·이길숙·김기춘
의원

1. 제안이유

-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 관련 성희롱고충전담창구장을 의회운영위원장에서 운영위원장으로 개정(안 제5조제2항)
- 소속 공무원 등 관련 성희롱고충전담창구장을 복지건설전문위원에서 복지문화건설전문위원으로 개정(안 제5조제2항)

3. 개정지침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4. 4. ~ 4. 9.

5. 참고사항 : 해당 없음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광명시의회 성희롱 예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복지건설전문위원”을 “복지문화건설전문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 입안자 | 의원 이영호 (2680-2508)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고충전담창구설치) ① (생 략)</p> <p>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창구장은 소속 의원과 관련하여서는 <u>의회운영위원장</u>이, 소속 공무원 등과 관련하여서는 <u>복지건설 전문위원</u>이 되며, 성희롱고충상담원은 각 창구장이 겸한다.</p> <p>③ · ④ (생 략)</p> | <p>제5조(고충전담창구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운영위원장</u> ----- ----- <u>복지문화건설 전문위원</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2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찬 성 자 : 이영호·조화영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이 2012년 8월에 제정된 이후 업무추진비 공개부분은 변함이 없었음
- 우리시 업무추진비 공개현황을 시의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이며, 너무 개략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공개 전·후에 큰 차이가 없음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시민들이 한 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서울시, 충남, 전남 등의 지자체처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2. 주요내용

-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광명시의회 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안 제4조 제1항제4호)
 - 업무추진비 총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기재
 - 업무추진비 매달 사용건수 및 합계 기재
 - 집행장소 및 주소 기재(주소는 “도로명” 까지 기재)
 - 집행대상 및 대상인원 기재

- 카드사용, 현금사용 기재
-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구분
- 집행시간 기재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8. 4. 4. ~ 4. 9.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기 타 : 타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자료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장, 부시장, 국·소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광명시의회 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제1호 서식)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를 “별지 제2호” 로, “별지 제2호” 를 “별지 제3호”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입안자 | 의원 김익찬 (2680-2538) |

[별지 제1호 서식]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집행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행률(%) |
|------|-----|-----|------|--------|
| 계 | | | | |
| 기관운영 | | | | |
| 시책추진 | | | | |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 연 번 | 부서명 | 집행일자 (집행시간) | 집행장소 (주소) | 집행 목적 | 집행 금액 | 집행 대상 | 대상인원 (명) | 결제방법 (카드/현금) | 구분 (기관/시책)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 1) 주소는 “도로명”까지만 기재

2) 집행대상 : 관내 언론관계자, 재난대응 비상근무자 등으로 기재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 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타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서울특별시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16. 1. 31. 현재, 단위 : 천원)

|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행율(%) |
|-----|---------|--------|---------|--------|
| 합 계 | 380,200 | 13,551 | 366,649 | 3.6 |

□ **서울특별시시장 2016년 1월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현업·우수부서 격려 등

(단위 : 원)

| 연번 | 부서명 | 집행일자 | 집행장소 | 집행목적 | 집행금액 | 대상인원 | 결제방법 |
|-----|------------|---------------------|----------------------|-------------------------|-----------|-------------|------|
| 합 계 | | | | | 1,290,300 | | |
| 1 | 행정국 총무과 | 2016-01-04 21:41 | 서울여인단팔빵 (중구 청파로길) | 시정 수행 및 의전 관 련 직원 격려 | 99,800 | 직원 22명 | 카드 |
| 2 | 행정국 총무과 | 2016-01-11 19:45 | 시카고피자 (중구 덕수궁길) | 시정 업무추진 유관기 관 격려 | 110,000 | 의회직원 21명 | 카드 |
| 3 | 행정국 총무과 | 2016-01-12 18:51 | 시카고피자 (중구 덕수궁길) | 투자유치 및 정보화 노 고 직원 격려 | 391,500 | 직원 65명 | 카드 |
| 4 | 행정국 총무과 | 2016-01-24 20:08 | 큐스 (마포구 망원로길) | 한파대응 비상근무자 노고 격려 | 300,000 | 직원 35명 | 카드 |
| 5 | 행정국 총무과 | 2016-01-04 20:08 | 큐스 (마포구 망원로길) | 한파대응 비상근무자 노고 격려 | 389,000 | 직원 50명 | 카드 |

□ 충청남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5년 5월)

(2015. 5. 31. 현재, 단위 : 천원)

| 구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집행율 |
|------|---------|--------|---------|-------|
| 계 | 276,200 | 70,133 | 206,067 | 25.4% |
| 기관운영 | 167,200 | 47,470 | 119,730 | 28.4% |
| 시책추진 | 109,000 | 22,663 | 86,337 | 20.8% |

□ 충청남도지사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2015년 5월)

(단위 : 원)

| 지출일자 | 집행내용 | 집행액 | 집행장소 | 집행인원 | 비고 |
|------------|--------------------|------------|---------|------|----|
| 계 | 35건 | 11,420,520 | | | |
| 2015-04-15 | 행정혁신대학 참석자 격려간담회 | 929,000 | 코웰스도고센터 | 80 | 카드 |
| 2015-04-16 | 4.19혁명 유공자와의 간담회 | 396,000 | 보해맛동산 | 18 | 카드 |
| 2015-04-16 | 소속 상근직원 생일 격려 | 100,000 | 구내매점 | - | 카드 |
| 2015-04-18 | 도정 협조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 400,000 | 산울림 | 17 | 카드 |
| 2015-04-18 | 정책자문위 관계자 간담회 | 460,000 | 다구래 | 26 | 카드 |

□ 전남도지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5월)

| 부서명 | 집행일자 (집행시간) | 집행내용 | 집행금액 (원) | 사용 장소 | 인원 | 결제 방식 | 구분 |
|-----|-----------------|---|-------------|--------------|--------------------|----------|----|
| 도지사 | 5.03 (13:30) | 영호남 상생화합 공무원 영산강종주 자전거 라이딩 행사 참가자 격려식비 | 553,000 | 나눔미 갈비 | 전남, 경남 공무원 등 40 | 카드 | 기관 |
| 도지사 | 5.07 (12:40) | 네팔지진피해 다문화가정 위문 현장방문 수행공무원 격려 | 12,000 | 보성녹차 휴게소 | 수행공무원 등 3 | 카드 | 기관 |
| 도지사 | 5.08 | 직원가족 애사관련 근조기 구입 | 1,820,000 | 세화통상 | 근조기 7 | 카드 | 기관 |
| 도지사 | 5.14 (12:45) | 투자유치 유렵순방활동지원 수행비서 노고 격려 | 16,000 | 희락 김포공항 | 수행공무원 등 2 | 카드 | 기관 |
| 도지사 | 5.14 | 119구급활동 우수 기관표창 수상부서 격려 | 500,000 | 방호구조과 | 119구급활동 관계자 | 현금 | 기관 |
| 도지사 | 5.15 | 가정의 달 기념 유공 기관표창 수상부서 격려 | 500,000 | 여성가족 정책관실 | 여성가족 정책관실 | 현금 | 기관 |

□ 세종특별자치시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5년도 5월)

(단위 : 원, 명)

| 집행 일자 | 집행내용 | 집행액 | 집행장소 | 집행 인원 | 집행대상 | 지출 방법 | 비고 |
|------------|----------------------|-----------|--------|-------|----------------------------------|-------|----|
| | 17건 | 5,535,500 | | | | | |
| 2015-05-04 | 소속 직원 격려 급식 경비 지급 | 11,000 | 유명식당 | 2 | 시장, 수행 1명 | 카드 | |
| 2015-05-11 | 소속 직원 격려 급식 경비 지급 | 63,600 | 봉평면옥 | 7 | 시장, 비서실직원 6명 | 카드 | |
| 2015-05-11 | 직원 가족 사망에 따른 부의금 지급 | 60,000 | 소속직원 | 1 | 산림축산과 000 | 현금 | |
| 2015-05-11 | 중앙부처 관계자와의 간담회 경비 지출 | 660,000 | 베어트리파크 | 17 | 시장, 수행4, 중앙부처 관계자 12 | 카드 | |
| 2015-05-12 | 소속 직원 격려 급식 경비 지급 | 42,000 | 석기정 | 6 | 시장,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 4명, 수행원 2명 | 카드 | |

□ 2016년 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제주도)

| 연번 | 집행 일자 | 집행내역 | 집행액 | 집행대상 | 사용처 | 집행 방법 | 집행 유형 |
|----|---------|-------------------------------|------------|------------------|---------|-------|-------|
| | 계 | 총 13건 | 11,357,500 | | | | |
| 1 | 02월 02일 | 제주지역 현안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 487,000 | 도내 언론 관계자 등 | 오죽일식 | 카드 | 간담회 |
| 2 | 02월 02일 | 1월중 소속직원 경조사 축부의금 지출 | 600,000 | 관광정책과장 등 | 원희룡 | 현금 | 현금 |
| 3 | 02월 03일 | 설명절 상황실 운영부서 및 현장근무직원 등 격려 실시 | 3,870,000 | 현장근무자 | (주)제주은행 | 카드 | 물품 |
| 4 | 02월 04일 | 도정 주요현안 홍보를 위한 국가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 144,000 | 국 가 기 관 관계 공무원 등 | 곰 | 카드 | 간담회 |
| 5 | 02월 05일 | 설명절 상황실 운영부서 및 현장근무직원 등 격려 실시 | 3,400,000 | 설명절 상황실 운영 부서 등 | 원희룡 | 현금 | 현금 |
| 6 | 02월 05일 | 제주 환경현안에 대한 업무추진 관계자 간담회 | 475,000 | 환경보전국장 등 | 도라지식당 | 카드 | 간담회 |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

| | |
|----|--|
| 의안 | |
|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8년 4월 2일

발 의 자 : 김기춘 의원

찬 성 자 : 안성환·나상성·김
익찬 의원

1. 제안이유

- 빈곤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진로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빈곤대물림을 차단하고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지원사업(안 제5조)
- 위원회 구성(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8. 4. 4. ~ 4. 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불 입

광명시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제1호와 제4호에 따라 빈곤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진로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빈곤대물림을 차단하고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청소년” 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진로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14세부터 24세로 한정한다.
2. “빈곤청소년과 가족” 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제1호와 제4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과 가족을 말한다.
3. “진로프로그램” 빈곤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 할 수 있도록 진로검사,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사례관리”란 지역사회와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빈곤청소년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빈곤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지원을 위하여 빈곤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곤청소년과 가족 진로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과 탈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희망플랜광명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곤청소년과 가족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4조(희망플랜광명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희망플랜광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빈곤청소년 진로 계획 수립
2. 빈곤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진로프로그램 사업
3. 빈곤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 사업
4. 빈곤청소년 진로 관련 관계 기관과의 연계 지원망 구축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빈곤청소년들을 진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빈곤청소년과 가족의 빈곤대물림 차단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빈곤가정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담당공무원,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교육 관련 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인, 운영시설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곤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방안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명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
| 입안자 | 김기춘 의원 (2680-2537) |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발의년월일 : 2018년 3월 28일

발 의 자 : 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김기춘·나상성 의원

1. 제안이유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을 완화하여 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운동시설의 기준을 완화(안 별표 5)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운동시설의 기준을 완화(안 별표 6)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8. 4. 4. ~ 4. 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5 및 별표 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별표 6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소관부서 | 스마트도시과 |
| 입안자 | 의원 안성환 (2680- 2520) |

제27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1항 및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따른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따른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따른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따른 건축물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따른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따른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따른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따른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따른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따른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따른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따른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따른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7조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목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